

문서번호	기획예산과-44 44
결재일자	2016.3.23.
공개여부	대시민공개
보도여부	

주무관	기획조정팀장	기획예산과장	기획재정국장
윤종대	이택모	조상연	03/23 이상형
협 조	세무과장	정장섭	
	지역경제과장	정길용	
	재무과장	김영모	부동산정보과장 주재현

2016년 기획재정국 성과상여금 지급 계획

2016.3.23.

강 북 구
(기획재정국)

2016년 기획재정국 성과상여금 지급 계획

「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 및 「2016년 지방공무원보수 업무등 처리지침」에 의거 기획재정국 직원의 근무성적·업무실적에 상응한 상여금을 공정하게 지급하고자 함.

I 지급개요

□ 관련근거

- 『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』 제6조의2(성과상여금)
- 『2016년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』(행정자치부 예규 제42호)
- 『2016년 성과상여금 지급 기본계획』 통보 (행정지원과-8174, 2016.3.21.)

□ 지급대상: 148명

- 5급이하 일반직공무원

계	5급	6급	7급	8급	9급
148명	6명	34명	74명	25명	9명

□ 지 급 일: 2016. 3. 31(예정)

□ 지급기준일: 2015. 12. 31. (평가대상기간 : 2015.1.1 ~ 12.31)

□ 지급 방법: 연1회 개인별 평가 후 차등지급(매월 분할)

□ 소 요 예 산: 429,672천원

II 지급계획

지급등급별 인원비율 및 지급률

지급등급 및 지급률

지급등급(인원비율)	S등급 (20%)	A등급 (45%)	B등급 (35%이내)	C등급 (2%내외)
지급률(지급기준액 기준)	162.5%	125%	95%	0%
지급인원(명)	30	66	52	7 (휴직자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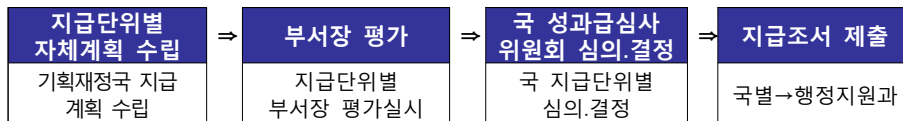
지급기준액 (단위:원)

구분	5급	6급	7급	8급	9급
표준 지급기준액	3,555,800	3,057,000	2,599,000	2,159,000	1,835,800
조정 지급기준액	조정지급기준액=지급기준액 × 조정지수(표준평균지급률/ 평균지급률)				

지급액: 지급기준액의 평균 110% (예산범위내)

지급대상: 2015. 12. 31. 기준 기획재정국 소속공무원

III 지급절차



평가방법

- 근무성적평정(50점), 성과급심사위원회 평가(30점), 부서장 평가(20점)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
 - ▶ 근무성적 평정(필수항목): [(‘15년 상반기 + ‘15년 하반기 평정점)/2]
 - ▶ 국 성과급심사위원회 평가: 적정성 검토 및 조정 결정(30점)
 - ▶ 부서장 평가 : 지급단위별 각 부서장이 부서의 특성에 따라 업무난이도, 직무수행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최대20점 범위 내에서 점수부여
 - 직급별 평가 비율
 - 5급·6급(상당) : 국장 100% 평가
 - 7급(상당)이하 : 부서장 100% 평가
- 지급제외 대상자: 2개월 미만 근무자(휴직자 등)

순위명부의 작성

- 개인별 종합평가점수에 따라 직급.서열순으로 작성

기획재정국 성과급심사위원회 운영

- 기획재정국 성과급심사위원회 구성 (6명)
 - . 위원장: 기획재정국장
 - . 위 원: 기획예산과장, 재무과장, 지역경제과장, 세무과장, 부동산정보과장

심의내용

- . 개인별 점수부여 및 적정성 검토
- .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자 선정의 적정성 검토
- . 기타 조정 및 결정이 필요한 사항

- 지급단위(성과급심사위원회)별 조정점수(30점) 부여
- 평가 전 심의위원회 위원 평가 교육 실시

□ 지급등급결정 결과 통보 및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

- 지급단위별 순위 결정시 최대한 공정성 유지
- 등급결정 통보 및 이의제기 절차
 - ① 국 성과급심사위원회는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결과를 부서장에게 통보 ⇒ 부서장은 즉시 소속 공무원에게 지급등급 통보
※ 성과상여금 지급내역은 본인이외의 자에게 공개 금지
 - ② 본인 지급등급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소속기관 부서장에게 이의 제기
 - ③ 소속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, 해당 성과급심사위원회에 1일 이내 재심요구
 - ④ 성과급심사위원회에서는 재심사 청구가 접수된 날로부터 1일 이내 재심 결과를 본인에게 통보

IV 행정사항

- 국 성과급심사위원회 심의의결 : 3. 23.(수) 중
- 의결서, 지급순위명부 및 지급조서 행정지원과 제출: 3. 23.(수)까지
-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결과 통보: 3. 23.(수) 까지
- 이의제기분 심사위원회 심의결과 통보: 3. 25.(금) 까지

- 붙임 1. 성과급심사위원회 평가등급 결정시 고려사항 1부.
2. 성과상여금 지급순위명부 및 지급조서 1부.
3. 성과급심사위원회 의결서 1부.
4. 성과상여금 지급결정 통보서 1부.
5. 이의신청서 1부. 끝.

【붙임 1】

성과급심사위원회 평가등급 결정시 고려 사항

성과급심사위원회는 동점자 처리 등 별도의 조정사유가 있을 경우 지급단위별로 부서별 특성 및 근무여건을 반영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가 전에 직원들의 의견수렴 후 자체기준을 설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

□ 주요 고려사항

- 대한민국 공무원상(대통령 및 국민총리 표창 수상자) 성과상여금 등급부여 우대
- 구정 주요업무추진 우수부서 및 예산절감 우수부서의 유공공무원
- 기관별 당면 현안업무 추진자, 타 직원이 기피하는 업무담당자
- 구민으로부터 민원처리시 친절공무원으로 추천된 자
- 업무 및 제도개선, 예산절감, 고충민원 처리 자, 상훈, 표창수여자, 수상자 등
- 구민으로부터 민원처리 시 불친절 지적을 받는 등 근무자세가 불성실한 자 (감점요인)
- 기한 내 민원업무 등을 처리하지 않은 자 등(감점요인)
- 공무원이 성과상여금을 부당수령하게 하거나 부당 수령한 경우에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함
 - ※ 과거의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행위가 감사부서 등으로부터 금년도에 확인된 경우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서 배제하되, 성과상여금이 이미 지급된 경우에는 다음연도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함

<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행위 규정(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, 행정자치부 예규제42호)>

- 성과상여금을 근무성적, 업무실적 등 성과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
- 담합, 몰아주기 등을 통해 성과상여금을 수령하는 행위
- 성과상여금을 정상 지급 받은 후 협의(모의)하여 재배분하거나 재배분받는 행위
- 성과상여금을 지급의 근거가 되는 개인 정보를 제공하거나 받은 행위

【붙임 2】

성과상여금 지급순위명부 및 지급조서(6급)

□ 지급단위 : 기획재정국

[단위 : 원]

순위	소속	직급	성명	근무성적 평가점수 (50점)	부서장 가 (20점)	심사위 가 (30점)	총 점 (100점)	지급 등급
합 계								
1								
2								
3								
4								
5								
6								
7								
8								
9								
10								

확인자 : 기획재정국장 이상형 인

【붙임 3】

성과급심사위원회 의결서

○ 안 건 :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 및 지급률 심의 . 의결

○ 일 시 : 2016. 3. .(수) :

○ 장 소 :

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6조의2 및 2016년 성과상여금 지급계획에 의거 기획재정국 소속직원의 “성과상여금 지급순위 명부 및 지급조서”를 별첨과 같이 제출합니다.

2016. 3. .

기획재정국 성과급심사위원회

구 분	직 위	성 명	서 명(인)
위원장	국장	이상형	
위 원	기획예산과장	조상연	
위 원	재무과장	김영모	
위 원	지역경제과장	정길용	
위 원	세무과장	정장섭	
위 원	부동산정보과장	주재현	

성과상여금 지급등급 결정 통보서

1. 소 속 직 성명

2.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:
※ 최하위등급사유

2016년 월 일

기획재정국 성과급심사위원회위원장

이 의 신 청 서

소 속	직 급	성 명
성과상여금 지급등급		
이의신청 사유 (구 체 적 으 로 기재하고 관련 증빙서류 첨부)		
기타 참고사항		
<p>「지방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」 및 「성과상여금제도 운영지침」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2016년 월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이의신청인 직급 성명 (서명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기 획 재 정 국 성 과 급 심 사 위 원 회 귀 중</p>		